페이지	개정전					개정후			
1-4 표 (1)내용 중 자구수정	(1) 재무제표 주장 (감사목적) ^(주1)	(1) 발생사실(Occurrence): 기록된 거래와 사건은 발생되었고 기업에				 (1) 발생사실(Occ 귀속됨 (2) 완전성(Comp 록되었음 (3) 정확성(Accu 데이터는 절 (4) 기간귀속(Cu 	currence): 기록된 거래 pleteness): 기록되어야 racy): 기록된 거래와 <u>합하게</u> 기록되었음. t-off): 거래와 사건은	형에 대한 경영진 주장 와 사건은 발생되었고 기업에 하는 모든 거래와 사건은 기 사건에 관련된 금액 및 기타 해당 보고기간에 기록되었음 · 적절한 계정으로 기록되었음	
	2. (생략) 3. (생략)					3. (기존과 같음)			
1-5 표 (2)내용 중 괄호내용 삭제					만을 언급하	기 때문에 기업의 힝		영진이 기업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1-7 표 (3)내용 중	⑤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 가 정하되, 금융위원회의 사전승인 을 얻어야 한다. (외감법 제5조)				⑤ 회계감사기를 다. (외감법 제		사회 가 정하되, 금융 위	 원회의 사전승인 을 얻어야 한	
2-1 표 내용 중		장법인 인(직전 사업연도말 백 <u>1,000억</u> 이상인	(생략)	(생략)		앙장법인 인(직전 사업연도말 백 <u>5,000억</u> 이상인	(기존과 같음)	(기존과 같음)	

페이지	개정전					개정후				
2-2 표 내용 중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대형비상장법인 (직전 시업연도말 현 재 자산총액 1,000	(생략)		(생략)	(생략)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대형비상장법인 (직전 시업연도말 현 재 자산총액 5,000	(기존과 같음)	(기존과 같음)	(기존과 같음)
	의 이상인 법인) 및 금융기관					의 이상인 법인) 및 금융기관				
2-3										
주1 내용 중	가. (생략)	회계법인			감사반 (생략)	회계법인 가. (기존과 같음)			감사반 (기존과 같음)	
	나. 모든 대상 기업 단, <u>주권상장법</u>	을 원칙적으로 감사할 수 : <u>인등의</u> 경우에는 일정요 회에 등록된 회계법인만	건을		(8-1)	다. (기존과 끝음) 나. 모든 대상 기업을 원칙적으로 감사할 수 있음. 단, <u>주권상장법인의</u> 경우에는 일정요건을 갖 춘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만 감사를 할 수 있음. 다. (기존과 같음) 라. (기존과 같음)		- 갖	(/ 12	
2-15 사례문제2의 문②풀이	풀이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회사 및 금융회사의 경우 금융위에 등록된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회계 법인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감사반의 경우에는 주권상장법인 및 증선위 지정법인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2-18 첫 번째 단락					한편 외감법 제11조 기당하다고 판단되는 경 있다.					

페이지	개정전	개정후
2-19 두 번째 단락	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외감법 제2조의3에 의하면, 감사인 은 연차재무제표의 외부감사를 실시할 때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규정 사항의	외감법 제8조에 따라 회사(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는 제외)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외감법 제8조에 의하면, 감사인은 연차재무제표의 외부감사를 실시할 때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규정 사항의 준수 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대한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10	참고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	참고 ▮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도입
참고박스	다. 즉, 국내회계법인은 형식적인 설립요건(공인회계사 10인 이상, 자본금 5억 원 이상)	된 회계법인은 <u>상장법인에</u> 대한 감사를 제한없이 할 수 있었다. 즉, 국내회계법인은 형 식적인 설립요건(공인회계사 10인 이상, 자본금 5억 원 이상)만 갖추면 공인회계사법 상 특수법인으로서 (법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상 유한회사 규정 을 준용) 모두 금융위에 등록가능하며, 감사업무 대상에 제한이 없었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품질관리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회계법인도 <u>상장법인을</u>
3-16 박스 중 좌측	① 임직원이거나 또는 과거 1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경우 ^{* (주))} ②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가. 주식소유 [*] →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소유한 경우 나. 채권·채무 관계 ^(주2) 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다. <u>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실을 제공받은 경우</u> 라. 기타 경제상 특별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① 임직원이거나 또는 과거 1년 이내 임직원이었던 경우 ^{* (주1)} ②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가. 주식소유 [*] → 신주인수권부사채, 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소유한 경우, 단, 감사기간 동안 합병·상속 또는 소송 등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 후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지체 없이 처분한 경우는 제외. 나. 채권·채무 관계 ^(주2) 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 [*] 다.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대가로 사무소나 영업용 차량을 제공받은 경우라. 기타 경제상 특별이익을 제공받은 경우

페이지	개정전	개정후
3-16하단~ 3-17상단 (주2)내용	(주2) 다음과 관련된 채권, 채무는 제외한다. ①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채권 ②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 한도 이내의 예금, 적금 등 채권 ③ 표준약관에 따라 구입하거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회원권, 시설물이용권 등 채권 ④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채권 ⑤ 주택담보대출, 예금담보대출 등 통상의 절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성립된 채무 ⑥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지급기일이 2월 이내인 채무 중 연체되지 아니한 채무 ⑦ 감사기간 중 합병, 상속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발생된 채권 또는 채무 특히, ⑦번의 경우 윤리기준에서는 다음의 내용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회계법인 등 또는 인증업무팀의 구성원의 독립성이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참고로, 개정된 공인회계사법에서는 감사기간 중 합병・상속 또는 소송 등에 따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비자발적으로 취득한후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지체 없이 처분한 경우에도 독립성은 훼손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주2) 다음과 관련된 채권, 채무는 제외한다. ①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채권 ②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에 대해「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중 다음의 채권 또는 채무.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하게 체결한 계약이나「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받아야 하는 금융기관과 체결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는 제외한다. 1) 다음의 채권 또는 채무 중 감사기간 중에 만기를 연장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가가 주택담보대출・예금담보대출 등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성립된 채무나」「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의」 건축물이나 주택의 분양・공급 등과 관련하여「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와 일괄적으로 체결한 대출계약으로 발생한 채무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지급기일이 2개월 이내인 채무 중 연체되지 않은 채무 ④ 1)부터 3)까지의 채권 또는 채무 외의 것으로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③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에 따라 구입하거나 정상적인 가액으로 구입한 회원권・시설물이용권 등 채권 ④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채권 ⑤ 감사기간 중 합병、상속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발생된 채권 또는 채무 ⑥ ①부터 ⑤까지의 채권 또는 채무 외의 것으로서 상거래를 위해 약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발생한 3천만원 미만의 채권 또는 채무
3-17 중간박스 삭제	 ❖ 재무적 이해관계로 인한 독립성 위배가 고의성이 없는 경우 대응조치(윤리기준 290.111) ❖ 가. 회계법인 내의 모든 구성원이 이 사실을 신속하게 회계법인에 보고하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마련함. 나. 회계법인 등이 해당 구성원에게 재무적 이해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점을 신속하게 통지함. 다. 해당 문제를 인지한 후, 해당 구성원을 인증업무팀에서 즉시 제외시키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재무적 이해관계를 청산하도록 함. 	(삭제)
3-17 하단 〈주의!!〉박스	〈주의!!〉 윤리기준 부칙 :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모회사 등에게 제공하는 비인증업무에 관	3-18페이지 맨 하단으로 위치 변경 (내용은 동일)

페이지	개정전	개정후
위치 변경	한 적용례 회계법인등은 (1) 제공되는 비인증업무의 결과가 감사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아 자기검토 위협을 발생시키지 않고 (2) 안전장치의 적용을 통해 동 비인증업무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독립성 훼손위협을 제거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으로 감 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은 재무제표감사의뢰인의 특수관계자(감 사의뢰인이 아님)에게 이 윤리기준에서 금지하는 비인증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1) 감사의뢰인을 작간접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로서, 감사의뢰인이 당해 회사에게 중요한 경우 (2) 감사의뢰인에 대하여 직접적인 재무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중요한 영향력을 행 사하는 회사로서, 그러한 이해관계가 당해 회사에게 중요한 경우 (3) 감사의뢰인과 공동의 통제하에 있는 회사(자매회사)로서, 동 회사와 감사의뢰 인이 이들을 지배하는 회사에게 각각 모두 중요한 경우	
4-14 중간 〈참고〉박스 삭제	참고 I 회계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인회계사법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할 의무가 존재하나 관련 법 개정에 따라 회계법인이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이외에 손해배상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공인회계사법상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의무가 면제된다.	(삭제)
4-22 사례문제3 박스내용 중 두 번째 단락	최근 ~ (생략)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칭함) <u>제17조(</u> 손해배상책임)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 및 감사보고서 이용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감사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투자자나 채권자	최근 ~ (기존과 동일)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칭함) 제31조(손해배상책임)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대상회사 및 감사보고서 이용자에 대해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하지만 지금까지 감사인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분석해보면 대부분이 투자자나 채권자

페이지	개장	선전		개정후		
	등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에 의해 제기된 것이을 본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그들의 손해를 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 (생략)	배 을 본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그렇	등 감사보고서 이용자들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감사보고서를 믿고 이용하였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나 채권자들이 그들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감사인들을 상대로 손해배 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 (기존과 동일)			
5-5 (3)제목 중	(3) 지배기업의 감사인이 동시에 부문감 별도의 감사계약서를 작성할지 여부 210 A25)	-				
7-46 3번째 행	1) 감사문서의 보관기한 : 감사종료 시점 (외감법 제14조의 2) 여기서 감사종료일 일 즉, 감사보고서일 시점으로 간주한 감사관련 문서의 보존기간을 감사보고 일)로부터 5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 시점은 일반적으로 감사증거 수집약 다. 참고로 감사기준에서는 일반적으 고서(그룹감사의 경우는 그룹감사보고	보료 (외감법 제19조) 여기서 감으로수, 감사보고서일 시점으로	사종료일 시점은 일반적으 간주한다. 참고로 감사기준 }사보고서(그룹감사의 경우	로 감사증거 수집완료일 에서는 일반적으로 감사 는 그룹감사보고서일)로	
10-7 4번째 행	(생략) ~. 하지만 모든 주권상장법인에 대 완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유예규정을		(기존과 동일) ~. 하지만 모든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에 따른 <u>기업의</u>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유예 및 면제규정을 두고 있다.			
	자산규모	시행시기		시행	시기	
	2조 이상	2019년 사업연도	자산규모(별도재무제표 기준)	별도재무제표 기준	연결재무제표 기준	
	5천억 이상	2020년 사업연도	2조 이상	2019년 사업연도	2023년 사업연도	
	1천억 이상	2022년 사업연도	5천억 이상	2020년 사업연도	2024년 사업연도	
	상장법인 전체	2023년 사업연도	1천억 이상	2022년 사업연도	2025년 사업연도	
			1천억 이하	면제	면제	

페이지		개정전		개정후	
10-8 표제목	주될 수 없기 때 현재 중요한 취약 적합한 증거를 입	《외감법 8조 4항》 소한 취약점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의 내부통제는 효과적이라고 간 문에, 감사인은 의견 표명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일 참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에 충분하고 감수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내부회계 한 취약점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않더라도 존재할	《ISA 1100 문단 5》 하나 이상의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 경우 기업의 내부통제는 효과적이라고 간 주될 수 없기 때문에, 감사인은 의견 표명의 기초를 형성하기 위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은 재무제표가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지 않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		
10-28 표내용 중 자구수정	업무수행이사의 이름 및 감사인의 서명, 감사인의 주소 및 감사보고서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일은 감사의견을 뒷받침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감사문서가 검토되었다는 증거를 포함함)를 입수한 날보다 빠르지 않아야 한다.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하지 않고 내부회계관리제도만을 감사할 수가 없으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와 재무제표감사는 통합되어 진행된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일은 재무제표 <u>감사보고서일과과</u> 동일하여야한다.	업무수행이사의 이름 및 감사인의 서명, 감사인의 주소 및 감사보고서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일은 감사의견을 뒷받침하는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감사문서가 검토되었다는 증거를 포함함)를 입수한 날보다 빠르지 않아야 한다.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감사하지 않고 내부회계관리제도만을 감사할 수가 없으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감사와 재무제표감사는 통합되어 진행된다. 따라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보고서일은 재무제표 <u>감사보고서일과</u> 동일하여야 한다.	
10-52 사례문제4 문①	상)를 제시하시. <mark>풀</mark> 이 <u>원칙적으로 주식:</u> 은 내부회계관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적용대 오. 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무제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데도 검토 대상이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원 미만인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용대상)를 <i>처</i> 풀 이 <u>직전년도말 자산</u>	<u>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u>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회사의 범위 시하시오. 총액 1천억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I지 개정전	
12 ❖ 금감원 2010년 회계현안 설명회 자료 ❖	
식제 에스크로(Escrow) 계약 관련 회계감사 유의사항	
1 근래 상장기업 중 일부회사가 외부감사 시 자산수증 등과 관련된 자금의 실재기 위해 에스크로계약을 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성을 입증하
에스크로(escrow)제도의 개념	
 ▶(의의) 금전・부동산 등을 거래하고자 할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양도인 자가 날인증서・증권・금전・주권 등을 중립의 제3자인 에스크로사업자(escrow에 예탁하고, 당해 에스크로사업자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증거서류를 보관하였다 성취한 때에 양수인 또는 채권자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조건부 제3자 예탁'(법권 건부양도증서'라고 정의) ▶(기능) 거래당사자의 채무가 동시 이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매자와 판매자계가 불확실할 때 거래사고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보장 	w agency) 가가 조건이 적으로 '조 간 신용관
② 최근 회계분식관련사례에서 발견되는 에스크로계약의 분석	
▶ (당사자) 일반적인 에스크로계약과 달리 회사와 에스크로 대리인(주로 법무법(긴) 2인이 당
사자 ▶ (내용) 에스크로 대리인의 자금보관의무 및 일정조건 성취 시 자금인출을 확약 서, 자금인출 전 감사인 또는 제3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된 경 ▶ (목적) 대부분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거절(또는 이로 인한 상징지 또는 변경하기 위해 회사의 자금보유사실을 증명하는 데 사용 ▶ (에스크로자금의 성격) 회수가능성 없는 부실채권(대여금채권 또는 전환사채) 금, 허위인 경영권 양도대금, 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의 횡령금반환액 및 대주등으로 회계처리하나	경우도 존재 장폐지)을 저 등의 매각대

페이지	개정전	개정후
	개정전 - 실제는 사채업자의 사체자금을 일시 이용한 것일 뿐 회사가 처분·통제할 수이 아닌 경우가 많음* *보통 사채업자 명의의 질권이 설정되어 있고 에스크로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감사인에게 제시로 인출하여 사체업자에게 반환 ③ 에스크로계약 관련 감사인의 감사절차 관련 지적사례 가. 감사인을 지적한 경우 ① 에스크로 계약서의 내용상 오류사항 미확인 ▶에스크로계약서에 에스크로 된 자금의 출처가 채권양도대금(회사주장)이 아닌으로 기재되어 있어, 동 에스크로 자금의 실재성이 매우 의심되었음에도 이에 절차 미수행 ▶ 주주의 횡령금 반환능력 및 실제 업금자에 대한 감사절차 미수행 ▶ 경영권양수인의 경영권인수능력이 매우 의심되는 상태에서 경영권양도대금의 내역만 확인하였을 뿐 인수능력에 대한 감사절차 미수행 ▶ 자산수증자의 중여능력, 증여의 타당한 이유 및 자금의 출처에 대한 감사절차 ▶ 수증자금을 CD로 발행하여 보관한 것에 대한 타당성, 보유규모의 적정성, CD 인정 여부 등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 ③ 에스크로계약서의 적정한 집행에 대한 감사절차소홀 ▶ 에스크로계약서의 적정한 집행에 대한 감사절차소홀 ▶ 에스크로계약에 자금인출조건을 반영하라는 감사인의 요구를 회사가 이행하지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 ① 관련 사실관계 및 에스크로계약 집행의 적정성 검토절차 수행 ▶ 전환사채매입대금의 현금실사, 법무법인에 대한 에스크로 요구 및 불시에 법무문하여 자금보관 여부를 확인 ▶ 감사인은 반환 합의서검토, 반환자금인출조건과 회계법인 통보의무 등을 포함	- 있는 자산 한 후에는 바 근 투자자금 대한 확인 나 에스크로 나 미수행 D의 자산성 다 아니하였

페이지	개정전	개정후
	로계약 체결 지시, 자금의 입금사실 확인, 에스크로계좌의 잔액증명서 수시확인 보고서일 이후) 동 자금이 출금된 사실을 확인하자 감사의견변경 여부 등을 한 의하는 등 적정한 절차 수행	공회에 문 학확신이 는 감사의 한 감사위 과 예치자
16-4 상단	관련 자산의 실재성 인정 Substitute	외감법 제22조 제6항 ⑥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페이지	개정전	개정후
16-18 상단	외감법 제22조 제1항 감사인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외감법 제22조 제1항 ① 감사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 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이하 "주주총회등"이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16-18하단 ~16-19	5) 문서화	5) 문서화
	부정과 관련하여 감사인이 반드시 문서화하여야 할 내용 (ISA 240 문단 44~45)	부정과 관련하여 감사인이 반드시 문서화하여야 할 내용 (ISA 240 문단 45~46)
	 업무팀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부정에 의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취약성에 대해 토론한 결과 도달된 유의적 결정 재무제표 수준과 경영진 주장 수준에서 부정에 의해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었다고 식별되고 평가된 위험 재무제표 수준의 부정에 의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응,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그리고 이들 감사절차와 경영진주장 수준의 부정에 의한 평가된 중요왜곡표시위험과의 연계성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계된 절차 등 감사절차의 적용결과 	 ① 업무팀이 기업의 재무제표가 부정으로 인하여 중요하게 왜곡표시 될 취약성에 대하여 토론한 결과 도달된 유의적 결정들 ② 재무제표 수준과 경영진주장 수준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식별 및 평가 내용 ③ 재무제표 수준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에 대처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응, 감사절차의 성격, 시기 및 범위, 그리고 이들 감사절차와 경영진주장 수준의 부정으로 인한 중요왜곡표시위험의 평가내용과의 연계성 ④ 경영진의 통제무력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설계된 절차 등 감사절차의 적용결과